

# 정 보 공 개 서

1	가맹본부	본냉삼집				
2	영업표지	본냉삼집				
3	가맹점명	본냉삼집 점				
4	계약 유형	신규 🗆	갱신		<b>향수도</b>	
5	가맹거래사 또는 변호사 자문일	년	월	일		
6	정보공개서,인근가맹점현황문서 및 가맹계약서 제공일	년	월	일		
7	가맹계약 체결일	년	월	일		
8	가맹금 예치일	년	월	일	예정	

### 가맹본사용 □ 가맹점 사업자용 □

가맹본부 소재지	경기 동두천시 평화로2313번길 7-24 1층(지행동)		
가맹사업부	가맹사업부 031-846-0392		
이메일 / 팩스 kicks4sendy@gmail.com		본 냉삼집	

<u>본 정보공개서 원본의 소유권은 본냉삼집 가맹본부에 있으며 이를 무단으로</u> <u>외부에 유출하거나 공개할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u>



[정보공개서 등록번호] 20231769

[정보공개서 최초 등록일] 2023.12.01 [정보공개서 최종 등록일] 2024.10.10.

## 본냉삼집

# 정 보 공 개 서

본냉삼집 가맹본부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에 따라 귀하에게 이 정보공개서를 드립니다.

20 . . .

〈주 의 사 항〉

이 정보공개서는 귀하께서 체결하려는 가맹계약 및 해당 가맹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담고 있으므로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희망자에게는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기간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이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은 날부터 14일(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이 지날 때까지는 가맹본부가 귀하로부터 가맹금을 받거나 귀하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이 정보공개서는 법령이 정한 기재사항을 담고 있는 것에 불과하며 그 내용의 사실 여부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서 모두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귀하께서는 어디까지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가맹사업을 운영하게 되므로 정보공개서의 내용에만 의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귀하께서 가맹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부터 그 내용에 구속됩니다. 따라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정보공개서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을 검토하시고 기존 가맹점사업자를 방문하여 얻은 정보에 근거하여 가맹본부의 신뢰성을 판단하도록 하십시오.

가맹사업은 법률, 회계, 경영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이 필요한 분야이므로 가맹거래사 등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귀하가 과거 사업경력이 없는 경우 관련 업종에서 경험을 쌓아 경영 수행 능력을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 초기에 많은 자금이 소요되므로 귀하의 재정상태를 확실히 점검한 다음 창업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가맹본부 소재지	경기 동두천시 평화로2313번길 7-24 1층(지행동)		
가맹사업부	031-846-0392		
이메일 / 팩스	kicks4sendy@gmail.com	본 냉삼집	



### 목 차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田.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b>Ⅲ</b> .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VI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Ⅷ. 교육ㆍ훈련에 대한 설명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현황

### [별첨] 리스트 ------

- 별첨 1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 별첨 2 정보공개서/인근가맹점 현황/가맹계약서 제공확인서 (가맹본사보관용)]
- 별첨 3 정보공개서/인근가맹점 현황/가맹계약서 제공확인서 (가맹점사업자용)]
- 별첨 4 가맹금 예치신청서
- 별첨 5 영업지역 설정
- 별첨 6 주방 설비 및 집기 리스트



#### < 정보공개서를 읽기 전에 >

- ◇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자료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귀하가 실제 운영할 사업 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충분히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별다른 문제가 없 는 경우에 가맹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법률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은 가맹본부 측에 충분한 설명을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가맹거래사나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자문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 가맹본부로부터 제공받은 정보공개서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등록한 정보공개서 (http://franchise.ftc.go.kr)를 비교하여 다른 내용이 있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에 허위・과장된 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 또 는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공개서와 함께 귀하가 창업하려고 하는 점포 예정지 인근 10곳의 정보(가맹점명, 소재지, 전화번호)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인근 점포를 직접 방문하셔서 가맹본부를 신뢰할 수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가맹본부와 상담하기 전 '창업희망자가 알아야 할 10가지 필수사항'과 '창업희망자를 위한 가맹사업 계약체결 안내서'를 확인하시고 가맹사업법 관련 조항도 찾아보십시오.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 - '알림마당' - '공지사항'
- ◇ 가맹본부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정보공개서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서를 계약서와 함께 잘 보관하십시오.
- ◇ 참고로,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을 신청하여 공정위 등에서 심사 중인 경우에는 실제 내용과 본 정보공개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으시면 가맹본부 에게 변경등록 신청여부 및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 반드시 확인받으시고, 필요한 경우 추후 변 경등록이 완료된 정보공개서의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 1. 가맹본부의 일반 정보

당사의 일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호	영업표지	주 소				
	본냉삼집	경기 동두천시 평화로2313번길 7-24 1층(지행동)				
ᇦᄖᄊᄭ	법인 설립등기일	사업자등록일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픽		대표팩스번호
본냉삼집	개인사업자	2021,07,13	김점용	031	-846-0392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	릒번호	729-	-32-01208

2. 특수관계인의 일반 정보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 3. 가맹본부의 인수・합병 내역
- 4. 가맹희망자가 경영할 가맹사업 (앞으로 본냉삼집이라 합니다)의 내용

귀하는 앞으로 아래 표에 따른 가맹사업을 경영하게 됩니다

구 분	내 용	추가 설명
명 칭	본냉삼집	돼지고기/ 냉동삼겹살 전문
상 호	본냉삼집	당사는 보통 해당 지역 명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상표(서비스표)	본생삼집	상표 출원중 출원번호: 4020230132698 출원일자 : (2023.07.25)

- 5. 바로 전 3개 사업연도의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 1) 당사의 바로 전 3년 동안의 재무상황 요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 부가세과세표준원 기준

연도	자산총계	부채총계	자본총계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2021년	-	-	-	105,972	-	-
2022년	-	-	-	393,430	-	-
2023년	-	-	-	402,052	-	-

2) 당사의 바로 전 3년 동안의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 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6. 가맹본부의 임원 명단 및 사업경력

당사의 임원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련여부	면여부 이름 현 직위		사업경력			
전 전 연 연 구	이름	선 역기	기간	직위	담당 업무	
가맹사업	김점용	대표	2021.07.13.~현재	대표	직영점 운영 및 가맹점	
관련 임원	<u> </u>	네표	2021.07.15.~연제	ᆁᄑ	총괄 / 기획 / 관리	

#### 7.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

당사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점	임원:	수(명)	지의스/면\
시엄	상근	비상근	직원수(명)
2023년 12월 31일	1		0

8.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의 가맹사업 경영 사실



당사 및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본냉삼집과 동일하거나 비슷한 가맹사업을 경영한 사실이 없습니다.

#### 9.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

당사가 귀하에게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명칭	권리내용	등록 및 등록신청 여부(일자)	출원번호 및 등록번호	소유자 (등록신청자)	존속기간 만료일 (가맹본부의 사용기간)
본생삼집	계약내용에 따른 영업 후 대가수령	출원일자 : 2023.07.25	출원번호 4020230132698	김점용	출원중

위의 지식재산권을 사용하는 방식에 대하여는 당사가 지정한 디자인, 사인물 등의 형태로 사용하여야 하며 당사의 사전 승인을 받지 않은 형태로 지식재산권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됩 니다.

당사의 지식재산권은 현재 출원 상태로 관계법에 의하여 보호받지 못합니다. 다만 당사의 지식재산권이 등록된 경우 귀하가 허용된 범위를 벗어나 당사의 지식재산권을 사용할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의 지식재산권내용은 한국특허정보원 특허정보검색서비스(http://www.kipri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파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1. 본냉삼집 을 시작한 날:

2023년 7월 11일

(직영점을 시작한 날: 2021년 07월 13일 )

#### 2. 본냉삼집 연혁

상호	영업표지	대표자 이름	가맹사업 경영 기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본냉삼집	본생삼집	김점용	가맹사업예정	경기 동두천시 평화로2313번길 7-24 1층(지행동)

#### 3. 본냉삼집 업종

영업표지	업종		
티내사자	대분류	소분류(주요상품)	
본냉삼집	한식	돼지고기/ 냉동삼겹살 전문	

4. 바로 전 3년간 사업연도 말 영업 중인 본냉삼집 가맹점 및 직영점의 총 수

(단위: 개)

지역	20		l <b>.</b>	2022.12.31.			2023.12.31		
시작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1	-	1	1		1	7	6	1
서울	-	-	-	-	-	-	-	-	-
부산	-	-	-	-	-	-	-	-	-
대구	-	-	-	-	-	-	-	-	-
인천	-	-	-	-	-	-	-	-	-
광주	-	-	-	-	-	-	-	-	-
대전	-	-	-	-	_	-	-	-	-
울산	-	-	-	-	-	-	-	-	-



세종	-	-	-	-	-	-	-	-	-
경기	-	-	-	1	-	1	7	6	1
강원	-	-	-	-	-	-	-	-	-
충북	-	-	-	-	-	-	-	-	-
충남	-	-	-	-	-	-	-	-	-
전북	-	-	-	-	-	-	-	-	-
전남	-	-	-	-	-	-	-	-	-
경북	-	-	-	-	-	-	-	-	-
경남	-	-	-	-	-	-	-	-	-
제주	-	-	-	_	-	-	-	-	-

#### 5. 바로 전 3년간 본냉삼집 가맹점 수

(단위: 개)

연도	연초	신규 개점	계약 종료	계약 해지	명의 변경	연말
2021	-	-	-	-	-	-
2022	-	-	-	-	-	-
2023	0	6	-	-	-	6

#### 6. 본냉삼집 외에 가맹본부가 경영하거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는 가맹사업 현황

당사는 본냉삼집 외에 다른 가맹사업을 운영하지 않고 있으며 당사의 특수관계인 역시 다른 가맹사업을 경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7. 바로 전 사업연도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직영점 매출은 제외)과 그 산정기준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20	2023년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					
	20001701	ద고급	연간 평균 매출액 연간 평균 연		연긴	난 평균	비고	
지역	2023년말	전신 정판	매출액	매출인	(상한)	매출	액(하한)	
	가맹점수	연간 평균	면적	. L. ★L	면적	취상	면적	
		매출액	3.3m²당	상한	3.3m²당	하한	3.3m²당	
전체	6	424,663	16,486	_	-	-	-	-
서울	-	-	-	_	-	-	-	-
부산	-	-	-	_	_	-	-	-



대구	-	-	_	_	-	-	-	-
인천	-	-	-	-	-	-	-	-
광주	-	-	-	-	-	-	-	-
대전	-	-	-	-	-	-	-	-
울산	-	-	-	-	-	-	-	-
세종	-	-	-	-	-	-	-	-
경기	6	424,663	16,486	-	-	-	-	-
강원	-	-	-	-	-	-	-	-
충북	-	-	-	-	-	-	-	-
충남	-	-	-	-	-	-	-	-
전북	-	-	-	-	-	-	-	-
전남	-	-	-	-	-	-	-	-
경북	-	-	-	-	-	-	-	-
경남	-	-		-	-	-	-	-
제주	-	-	-	-	-	-	-	-

※ 당사의 가맹점사업자 연간 평균 매출액은 부가세 부분(10%)은 제외한 가맹점별 POS(Point of Sales)상의 매출액을 근거로 하여 기재한 것입니다]

특히 경기지역의 경우, 6개월 이상 영업한 가맹점의 매출액을 1년치로 환산하여 전체 연간 평균 매출액을 추정하는데 근거수치로 포함하였으나, 2023년 8월 이후 영업을 개시한 4개 가맹점(가능점, 호원점,신곡점,별내점) 매출액은 1년치로 환산하여 전체 연간평균 매출액을 추정하는데 근거자료로 사용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판단하여 매출액 추정 근거자료로 활용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표에서 기재한 연간 평균 매출액은 전체 가맹점수 6개가 아닌 실제 2개 가맹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 추정 자료임을 알려드립니다.

매출액은 가맹점사업자별로 물품 공급액, 시장상황, 점주의 노력 등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 표에 나타난 매출액이 귀하가 올릴 수 있는 미래 수입과 같지는 않다는 점을 명심하여야 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항・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라 당사가 매출액 추정에 사용한 자료는 당사의 본사 사무실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귀하가 가맹본사로 방문하여 소정의 신청서를 작성하면 열람이 가능합니다.

8. 본냉삼집 가맹점의 평균 영업기간



연도	영업중인 가맹점 수	평균 영업기간
2023	6	4개월

#### 9. 가맹지역본부(지사, 지역총판)의 일반 정보

당사는 본냉삼집 가맹점 관리를 위하여 별도로 지사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 10. 광고・판촉 지출 내역

당사에서 [2023년]에 본냉삼집과 관련하여 광고비 및 판촉비로 사용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수단	기간	지출 비용(단위: 7 합계	<sup>턴원,</sup> 부가서 가맹본부	미포함) 가맹점	비고
	소계					
광고	인터넷		뇠	당 없음		
판촉			ОΠ			
근국	소계					
	합계	_				

#### 11. 가맹금 예치

귀하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가맹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국민은행에 예치하여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치기관 상호	담당 지점 또는 부서	주소	전화번호
국민은행	의정부중앙종합금융	경기 의정부시 행복로 39	031-846-5101

자세한 예치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귀하는 가맹금을 당사의 소정서식(**가맹금에치신청서)**을 작성하여 국민은행에 [계약 체결 당일 까지] 예치신청 하여야 합니다. [예치방법은 국민은행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를 다운받아 설치한 후 "예치 서비스"를 클릭한 다음 **본냉삼집을** 찾아 금액을 입력하면됩니다.



#### 가맹금 예치제도 이용 방법

- ▶ 기업인터넷뱅킹 가입 및 가맹금예치제도 이용신청
- ▶ 인터넷뱅킹 로그인(www.kbstar.com) → 기업 → 기업서비스 → 가맹금예치제도
  - \* 예치금의 반환승인, 지급승인, 지급보류 등록 및 해제는 인터넷뱅킹을 통해 직접 등록 하셔야 하며, 영업점에서는 거래가 불가능합니다.
  - ♥ 인터넷뱅킹을 통한 거래는 은행영업일 오전9시부터 17시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 □ 가맹금예치제도 주요업무

#### 예치

예치금에 대해 별도의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며 이용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합니다. 단, 은행은 수수료에 대한 내용을 약관에 따라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지급

예치금은 다음의 경우에 가맹본부가 신고한 신고계좌로 자동 지급합니다.

- 가맹점사업자가 인터넷뱅킹 통하여 예치금 지급승인 한 경우 지급승인일의 익영업일
-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금 예치시 등록한 가맹계약체결일로부터 2개월에 해당하는 날의 익영업일 (2개월이 경과한 시점까지 지급보류가 등록되지 않은 경우)

#### 반환

가맹본부가 인터넷뱅킹을 통하여 예치금반환승인을 하면 반환등록일 익영업일에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금 예치금 예치시 은행에 신고한 출금계좌로 자동 반환 합니다.

#### 지급보류

가맹점사업자가 제소, 알선신청, 조정신청, 중재신청, 공정위 신고를 완료한 경우에 인터넷뱅킹을 통하여 예치금지급보류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가맹금 예치방법은 각 금융기관별로 상이하며 금융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정확한 절차는 해당 금융기관을 통하여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는 또한 국민은행에서 발급한 예치증서를 보관하고 있어야 하며 아래 주의사항을 반드시 알아 두어야 합니다.

#### 가맹금 예치와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가 알아두어야 할 사항

- 1.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을 시작하거나 가맹계약 체결일부터 2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이 가맹예치 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됩니다.
- 2.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가맹금의 지급이 보류됩니다.
- 가.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 나.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알선, 조정, 중재 등을 신청한 경우



다.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금반환 사유가 발생하여 가맹본부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경우 3. 2번의 가~다의 조치를 취한 경우 그 사실을 예치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그렇 지 않은 경우 예치가맹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될 수 있습니다.

#### 12.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등의 체결 내역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가맹금 예치제를 운영하고 있기에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습니다.

### Ⅲ.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사실

#### 1.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 지사의 시정조치 등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 지사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 2. 민사소송 및 민사상 화해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거나, 사기・ 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로 받은 유죄의 확 정판결과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았거나, 민사상 화해를 한 사실이없습 니다.

#### 3. 형(刑)의 선고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를 범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 IV. 가맹점 사업자의 부담



#### 1. 영업개시 이전의 부담

귀하가 **본냉삼집**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금액이 소요됩니다. 이 금액에는 귀하가 지불하여야 하는 [점포의 임대비용 등]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또한, 귀하가 운영하게 될 점포의 위치 및 규모, 내부 설비의 종류, 영업 시작까지 걸리는 시간 등이 상이하므로 실제 지불하는 금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귀하가 부담하여야 할 대가는 매우 다양하나 크게 다음의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구분	지급 대상	예치 대상 여부	비고
최초 가맹금	가맹본부	예치	확정 금액
보증금	가맹본부	예치	확정 금액
기타 비용	가맹본부 또는 다른 업체	예치하지 않음	추정 금액

1) 최초 가맹금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금액	지급 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총계	5,500				
가맹비	3,300	가맹계약과 동시	가맹사업법에 따라 일부 반환 될 수 있음	가맹점오픈을 위하여 소멸되는 비용	-가입비 -개점 인력지원 및 개점준비 -점포실사 -가맹점 운영을 위한 노하우 제공
교육비	2,200	가맹계약과 동시	가맹사업법에 따라 일부 반환 될 수 있음	교육이 시작 된 시점 이후	교육이 시작되면 반환되지 않음

2) 보증금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없음)

구분	금액	지급 기한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	비고
총계	0	가맹계약과 동시	가맹계약에 의거	
				가맹사업법에 따라
거래보증금	2,000	가맹계약과 동시	가맹계약에 의거	일부 반환 될 수
				있음
담보목적물			해당없음	

보증금은 계약 종료시 전액이 귀하에게 반환되는 대가입니다.

다만, 귀하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상품, 원.부자재 대금 등 가맹계약서상의 이행 및 채무 또는 손해배상금액이 있는 경우 보증 금과 상계하여 처리합니다.

3) 예치가맹금의 범위와 그 금액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귀하가 예치하여야 하는 가맹금의 자세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금액(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합계	7,500
가맹비	3,300
교육비	2,200
거래보증금	2,000

4) 귀하가 그 밖에 지급하여야 하는 비용을 개략적으로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 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약 84m² 기준 / 단위:천원 / VAT 포함)



구분	지급대상	금액	면적 3.3m²당	지급기한	반환조건	비고
총계		69,882	2,795	_	_	_
인테리어 [점포내장공 사]	점주 자율 또는 외부공급 (미정)	49,500 84m <sup>2</sup> (약25평) 기준 (철거, 전기승압, 가스, 화장실공사, 덕트, 소방, 냉난방 등 별도)	1,980	외부 업체와	공사,발주 전 계약취소	약 84m² 기준 기본 설비 기준 매장 규모에 따라 사이즈 및 수량, 금액 변동 가능
전면간판/ 사이드간판		5,500	220	별도계약		전면 및 돌출 후렉스 간판
설비/집기	협력업체	14,882	595		발주 전 계약취소	기본 설비 기준, 가맹점 상황에 따라 소랴 그애
최초공급 비용 (개점행사 비용포함)						수량,금액 변동 가능
pos/무선단 말기	협력업체		_	업체와 별도계약	개점 전 계약취소	강제
검수비	<b>념수비</b> 인테리어 및 장비 검수비 3.3 <b>m²</b> 당 22만원(부가세포함)					지체설계 및 시공시

위 표의 금액은 당사가 그 동안의 가맹점 운영 경험을 토대로 추정한 것으로 실제 지불 금액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또한 개점을 위해 필요한 모든 품목은 가맹사업 전체의 통일성과 독창성을 유지할 수 있 도록 당사가 정한 매뉴얼 및 사양에 따라 설치/구매/유지하여야 합니다.

위 표 항목 품목일부를 직접 설치/구매할 경우 계약체결 시 당사와 별도 협의합니다.

①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한 업체가 아닌 다른 업체와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 할 경우, 당사의 인테리어 설계, 감리대가 및 장비 검수비 조로 3.3m² 기준 22만원 (VAT포함)을 별도로 내부 인테리어 공사 완료 후 3일 이후에 당사에 추가 지급하여야 합니다위 표의 면적 3.3 m²당 금액은 기준면적을 3.3 m²로 나눈 금액에 불과하며, 기준면적 보다크거나 작을 경우 정률로 금액이 늘어나거나 줄어들지 않습니다.



- ② 위 표의 금액은 당사가 향후 가맹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추정한 것으로 실제 지불금액과 는 다를 수 있습니다.
- ③ 상기 비용 이외에 설비의 품질, 선택사항에 대한 추가 및 점포 건물에 따른 소방시설, 보안시설, 배수, 통신설비, 화장실공사, 인허가, 배수공사, 변경공사, 어닝 등이 필요한 경우 별도의 소요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④ 상기 금액은 상권, 면적, 관련 법령 및 내부 규정의 변동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⑤ 자세한 비용은 점포환경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계약체결 시 매장실측 후 별도로 제공 안내하고 있습니다.
  - 5) 가맹점 입지 선정 주체 및 선정 기준

당사는 신규 가맹점 입지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선정주체	선정기준
	1) 가맹점사업자의 판단과 책임으로 가맹점의 입지를 조사·선정하며 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가맹점사업자	2) 입지선정과 관련하여 가맹본부는 해당지역의 행정구역상의 구분, 상권의 특성, 주요한 근린시설, 업종 특성에 따른 매출성향, 인근 가맹점의 영업지역 등을 고 려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조언을 할 수 있다.
기당검사합사	3) 가맹본부가 조언한 경우라도 최종 의사결정은 가맹점사업자가 하며, 가맹점의 매출액이나 수익액은 가맹점사업자의 관리능력이나 여건의 변화에 의하여 변동 될 수 있다.
	4) 가맹점사업자의 가맹점 개점에 관련된 인·허가 사항의 준비나 상가규약 등의 확인은 가맹점사업자의 책임으로 한다.

입지선정의 지연으로 인해 영업의 개시가 늦어지는데 따라 발생하는 비용은 당사가 책임 지지 않습니다.

6) 가맹점사업자와 그 종업원의 교육 및 계약·채용 기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교육을 받거나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에 종업원을 채용하기 위 하여 필요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교육 기준	계약ㆍ채용 기준
가맹점사업자	국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을 것 당사의 경영건강진단결과서 발급가능자 당사영업 방침을 준수할 것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이 아닐 것 만19세 이상일 것 파산, 개인회생등을 신청하거나 이에 준하는 절차가 개시된 자가 아닐 것. 피성년후견인, 피한정 후견인이 아닐 것
종업원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가능자	만18세 이상일 것

7)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설비 등의 내역 및 공급방법 · 공급업체

주방설비 기기 주요물품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 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집기 주요용품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 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집기 외 리스트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 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8) 당사는 가맹금 분납제도를 시행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가맹점사업자는 일시금으로 가맹금을 포함한 개설비용을 당사에 지급하여야 하나 분납여부 및 비율에 대해 당사와 협의를 통해 결정할 수 있습니다.

#### 2. 영업 중의 부담

1) 비용 부담

귀하가 영업을 시작한 후에도 다음과 같은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지급대상	금액	지급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로열티	가맹본부	월별 포스매출액 3%	익월 15일	-	-	-
리스료	해당없음	-	-	-	-	-
광고 분담금	가맹본부 가맹본부	가맹본부 50%	통지일로부터	광고	광고 집행	전체 가맹점
	10ET	가맹점사업자50%	10일전까지	미집행	от по	균분하여 납부
ᆔᄎᆸ다그	기메비비	행사에 따라 각	통지일로부터	판촉	교소 지체	
판촉분담금	가맹본부	가맹점별로 산정	10일전까지	미집행	판촉 집행	-
교육훈련비	해당없음	-	-	-	-	-
간판류 임차료	해당없음	-	-	-	-	-
영업표지 변경 등에 따른 간판변경 비용	외부업체 (미정)	디자인 및 인테리어 개발비용은 본사가 부담/각 가맹점내의 가판, 설비변경은 협의하여 부담	협의	미반환	변경설치	부득이한 경우 변경될 수 있으며, 교체비용은 당사자의 귀책사유 등을 고려하여 협의결정
영업지역 보장금	해당없음	-	-	-	-	-
시설, 각종 기기의	가맹본부	협의하여 부담	협의	미반환	변경설치	교체보수 필요시 시설, 기기 등의



교체.보수비용						내구연수 등을 감안하여 당사 와 협의하여 결 정
점포환경개선 비용	미지정	가맹본부 분담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협의	-	-	-
POS 사용료	협력업체	협의	지정일	미반환	실사용	-
지연이자	가맹본부	연15%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	-	대금결제 연체시
제조물 책임보험 화재보험	미지정	실비	지정일	미반환	실사용	-

상기 금액은 개략적인 추정치 이며 가맹본사 및 가맹점 사업자의 경영상황에 따라 변동 될수 있으므로 이점 양지 하시기 바랍니다.

2) 구입요구 품목 구입을 통한 가맹금 지급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 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3)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감독

당사는 귀하의 영업 상황에 대하여 일정한 감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감독 항목	내 용	시기	비고
운영관리	당사 가맹사업의 기준에 따른 점포운영 관리여부를 조사 실시		
재고관리	당사가 정한 규정 이외의 물품 취급 여부, 공급품의보관 상태 등 매장 운영 전반에 대하여 점검 및 감독	분기별 1회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회계처리	공급품의 구입과 판매에 관한 회계장부 등 감독		

#### 3. 계약 종료 후의 부담

1) 계약연장이나 재계약 과정의 추가 부담

귀하가 당사와 계약이 종료된 후에 연장(갱신, 재계약을 포함한다)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금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금액	지급 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총계	500				
추가 교육비	0~500 에서 실비부담	교육 시작 7일 이전	교육 시작 1일 이전에 계약 해지		추가교육 필요시
점포 이전비	협의하여 분담	점포 이전 후 10일 이내	점포 이전에 합의하지 않을 경우		점포이전 합의시

당사는 계약종료 시점에 점포 위치에 대한 정기 점검을 실시하고 있어, 가맹점 운영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당사가 판단하여 협의한 결과 가맹점도 이에 동의하면 점포 이전비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 2) 가맹본부의 사정에 의해 계약종료시 조치사항
- 가)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기존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승



계 여부

당사가 가맹사업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계약을 종료하고 계약관계를 탈퇴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양수한 사업자(가맹본부)와의 계약 관계유지를 원할 경우에는 가맹계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가맹관계를 탈퇴할 경우, 당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에 해당되므로 가맹점사업자는 남은 가맹계약기간을 고려하여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가맹본부가 사용을 허락한 지식재산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가 가맹점운영을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사용을 허가한 상표권, 특허권 등 지식재 산권이 존속기간의 만료, 소유권(사용권) 변경, 효력 상실 등의 사유로 더 이상 지식재산 권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사가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지 못할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는 체결한 가맹계약을 해지하실 수 있으며, 이 경우 귀책사유 등을 감안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 가맹본부가 해당 가맹사업을 중단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는 원칙적으로 모든 가맹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가맹사업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당사가 가맹사업을 중단하게 될 경우에는 이를 미리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지하고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것입니다. 이 경우 계약해지의 귀책사유를 고려하여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가맹점 운영권 양도 과정의 부담

귀하가 운영하는 **본냉삼집** 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경우에는 귀하가 **본냉삼집에** 지급해야 할 비용은 없습니다. 다만, 양수인은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교육을 받아야 하며 교육관련 실비를 지불할 수 있습니다.

4) 계약 종료 후의 조치 사항

가맹점사업자는 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상호·간판 등 영업표지의 사용을 중단하고 이를 철거 내지 제거하여야 하며, 가맹본부가 제공한 설비, 전산시스템 등 영업관련 자산을 가맹본부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이상의 내용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는 일정한 금액을 손해배상액으로 당사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지급한 계약이행보증금의 정산잔액과 정산서를 받을 때까지는 상



호·간판 등의 철거 내지 제거, 영업관리 자산의 반환의무 이행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 의무이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비용은 계약종료에 책임 있는 당사자가 부담합니다.

###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귀하는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사업의 동일성 유지를 위하여 영업활동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기재된 내용을 신중히 살펴본 후 계약 체결 여부를 판단할 것을 권장합니다.

#### 1. 물품 구입 및 임차

- 1) 귀하가 **본냉삼집**을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 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하는 자와 거래하는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 물품 구입 및 임차 현황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 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나) 주요 품목별 직전 사업연도 공급가격의 상・하한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 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2) 특수관계인의 경제적 이익

귀하가 본냉삼집을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당사가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용역・설비



·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의 특수관계인 이 수취하는 경제적 이익은 없습니다.

#### 2. 거래 강제 또는 권장의 대가 내역

1) 당사는 **본냉삼집**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요구 또는 권장하여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대가를 받습니다.

상품 • 용역	거래상대방	대가 지불	경제적 이익의 내용	금액	비고	
	가맹사업 예정으로 미정					
계						

2) 당사가 **본냉삼집**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 게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대가로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지 않습니다.

#### 3. 상품 • 용역, 거래상대방, 가격 결정

1)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 • 용역의 판매 제한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지정된 상품·용역만을 판매하여야 하며 그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품 • 용역명	제한내용 및 조건	위반시 책임	비고
급냉삼겸살	왼쪽에 기재된 이외의 제품을 판매할 수 없음 (단, 주류 및 음료는 제외)	1회 위반: 구두 경고 2회 위반: 2회 이상 서면 시정요구 3회 이상 위반: 계약 해지	

상품. 용역은 향후 계절적 요인 및 시장 상황등에 따라 증감 변동 될 수 있습니다.

귀하가 당사가 승인하지 않은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는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 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에게 상기 표에 기재된 상품·용역 이외에도 가맹사업의 개선, 고객 니즈의 변화, 경쟁업체의 출현, 시장변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가맹사업 전체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으로 기존 메뉴의 변경 또는 추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맹점 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지 못하며 가맹본부가 지정한 상품·용역만을 판매해야 합니다.

2) 거래상대방(고객)에 따른 상품 · 용역의 판매 제한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지정된 고객에 대해 상품·용역을 판매하지 않아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거래상대방	상품 • 용역명	제한내용 및 조건	위반시 책임	비고
	당사가 지정한			
경쟁업체	상품 · 용역	제한된	1회 위반: 구두 경고	
	및 당사 또는	거래상대방에게	2회 위반: 2회 이상 서면	
물품공급이	당사의 지정	무상지원 공급 및	시정요구	
중단된	업체로부터	판매 금지	3회 이상 위반: 계약 해지	
다른가맹점사업자	공급받은 물품			
미성년자	주류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된 거래상대방에게 제한된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거래상대방(고객) 외에도 판매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미리 얻고 있습니다.

3) 가맹점사업자의 가격 결정의 제한

당사는 귀하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가격을 정하여 이를 따르도록 권장하도록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품・용역명	권장가격(단위: 원)	가격통보 방법	비고
급냉삼겸살	13,000		
초신선 생삼겹살	15,000		
냉차돌박이	14,000		
할미 비빔국수	6,000	변동 시 월별로 pos	
80옛날떡볶기	5,000	또는 문자/카톡으로	지역 및 상권의 특성에 따라 당사와 협의하여 다르게
삼춘하이볼	6,000	공지	
할미 된찌	3,000		정하고 있습니다. (2023년 9월 기준)
살얼음 물냉면	6,000		(
김치찌게	6,000		
순두부찌게	6,000		
버터대하구이	8,000		

메뉴 및 권장 가격 등은 향후 계절적 요인과 시장 상황등 에 따라 중감 .변동 될 수 있습니다.

당사는 시장 상황이나 소비자의 동향 또는 기타 사정을 고려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가장적절하고 합리적이라고 생각되는 소비자 판매가를 정하여 권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권장가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에는 당사가 정한 소정 양식에 의하여 그 취지를 통지하고 당사와 사전협의하여야 합니다.

#### 4.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보호

1) 독점적・배타적 영업지역 설정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체결시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가맹계약서에 영업지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는 가맹계약기간 중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 동일한 업종의 직영점·가맹점을 추가 개설하지 않습니다. 동일한 업종의 범위 및 동일



한 업종에 해당하는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의 영업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동일한 업종 범위	동일한 업종 영업표지		
요독한 법은 됩니	가맹본부	계열회사	
돼지고기 및 냉동 삼겹살 전문점	본냉삼집	-	

2) 영업지역 설정기준

당사는 영업지역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설정 기준	설정방법
시/군/구 별로 5개점씩 개설하되	
1만명당 1개점 추가	
점포를 중심으로 반경 1킬로미터	[별첨 5]에 영업지역 표시
행정구역당 5점포	(지도별첨을 원칙으로 함)
단, 특수상권(백화점, 마트, 시장, 지하상가, 공항,	
호텔 등)은 행정구역과 상관없이 별도의	
영업지역으로 인정	

- -영업지역 설정은 가맹계약서상 [별첨1] 영업지역의 표시 기준에 따릅니다.-
- 3) 가맹계약 갱신과정에서 영업지역을 재조정할 수 있는 사유 및 절차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갱신시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해서 가맹점사업자와 합의를 통하여 기존 영업지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지역 재조정 사유	재조정 절차	동의를 얻는 방법
① 재건축, 재개발, 신도시 건설 등 대규모개발로 인하여 상권의 급격한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② 해당 상권의 거주인구 또는 유동인구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③ 소비자의 기호변화 등으로 인하여 해당 상품·용역에 대한 수요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④ 위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영업지역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조정 사유 발생 → 당사 담당팀 검토 → 영업지역 변경(안) 작성 →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 통지 → 가맹점사업자 동의 → 영업 지역 변경 완료	영업지역 변경(안)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30일 이내에 동의 여 부 회신 동의가 있는 경우 15일 이내에 영업지역 재조정 완료 (신규 점포 입점 가능)

4) 영업지역 밖의 고객에게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는 데에 따르는 제한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와 약정한 영업지역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영업지역을 벗어나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역지역에 속한 고객에게 영업활동을 하는 경우 가맹본부는 다음의 조치를 취하여 가맹점사업자 상호간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첫째,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의 고객과 거래하는 경우 가맹본부가 두 가 맹점사업자 간의 보상금 지불에 대한 중재안을 제시하는 행위

둘째, 영업지역을 침해받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정 조정 요구가 있는 경우 매출액 현황 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행위

셋째, 특정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반복적으로 침해하여 가맹본사 영업 표지 이미지에 심각한 손해를 가한 경우 그 가맹점사업자에게 행위의 시정을 요구하고 손해 배상액을 청구하는 행위

5)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내의 대리점 등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본냉삼집**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서 대리점, 다른 영업표지를 사용한 가맹점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6)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유통업체명	주소	취급품목	가맹점과의 구분

7) 그 밖에 영업지역에 관한 내용

해당 사항 없음

- 5. 가맹본부의 온라인 오프라인 판매에 관한 사항
  -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연간 국내 매출액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매출액 비중

(단위: %)

	국내 온라인·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연도	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온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가맹점	기타 오프라인	자사 온라인몰	기타 온라인
2023	61.46	38.54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국내 판매상품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전용 판매상품의 비중 (단위: %)

연도	오프라인 전용상품 비중	온라인 전용상품 비중
2023	0	0

- 6. 계약기간, 계약의 갱신・연장・종료・해지・수정
  - 1) 가맹계약 및 갱신 기간



	계약기간	갱신시
년	2년	1년

본냉삼집 가맹사업의 계약기간은 계약 체결일 로부터 2년이며, 가맹계약 갱신시 계약기간은 계약갱신일로부터 1년입니다.

2) 계약 연장이나 재계약, 또는 계약 종료에 필요한 절차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귀하에게 는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최초 계약일로부터 10년간 주어집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순 서	기간(계약만료일:
문 시	D-day)
①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을 요구하였습니까?	D-180 ~ D-90
예→②, 아니오→⑦	D-160 ~ D-90
② 3)에서 정한 계약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합니까?	D-180 ~ D-90
예→④, 아니오→③	D-100 ~ D-90
③ 가맹본부가 계약조건 변경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D-180 ~ D-90
예→⑤, 아니오→A	D-100 ~ D-90
④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거절 사유를 적은 서면으로 거절 통지를 하였	
습니까?	①+15일 이내
예→B, 아니오→A	
⑤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조건 변경에 동의하였습니까?	
예→C, 아니오→⑥	
⑥ 변경된 계약조건이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인	
니까?	
예→B, 아니오→D	
⑦ 가맹본부가 계약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D 100 D 00
예→B, 아니오→®	D-180 ~ D-90
⑧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 또는 계약조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습니까?	D COOL 이전
예→E, 아니오→A	D-60일 이전
A.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B.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날 계약 종료	D-day
C.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D.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조건을 바꾸어야 함(가맹본부가 계약 변경을 강행할	경
우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	-
E.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을 만료하거나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민
사상 문제로 가맹사업법에서 특별하게 제한하는 규정 없음)	_

3) 계약 갱신 거절(종료) 사유

당사가 가맹계약의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갱신요구 거절 사유	관련 계약조문
1. 가맹계약상의 가맹금 등의 지급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	제39조 제1항
2.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귀하가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	제39조 제1항
3.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점포·설비의 확보나 법령상 필요한 자격·면허·허가의 취 득을 하지 못한 경우	제39조 제1항
4.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공법 또는 서비 스기법을 지키지 않은 경우	제39조 제1항
5. 가맹사업 경영에 필수적인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방침을 지키지 않은 경우	제39조 제1항
6.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다만, 교육·훈련 비용이 같은 업종의 다른 가맹본부가 통상적으로 요구하는 비용보다 뚜렷하게 높은 경우는 제외합니다.)	제39조 제1항

4) 계약 해지 사유 및 그 절차

당사가 귀하 와의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계약 해지 사유	관련 7	계약조문
1.가맹점사업자에게 본 계약에서 정한 물품공급중단 사유가 있는 경우	제403	5 제1항
2.가맹점사업자가 점포의 규모, 대표자 등의 가맹점의 표시에 해당하는 사항을 임 의로 변경하는 경우	제40조	5 제1항
3.가맹점사업자가 당사가 허용한 영업표지의 사용범위 외에 서면 동의 없이 영업 표지를 사용하는 경우	제403	5 제1항
4.가맹점사업자가 당사가 보유한 영업표지를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양도한 경우	제403	5 제1항
5.가맹점사업자가 공급품 대금 및 기타 대금의 약정한 납입기일을 경과하는 경우	제403	5 제1항
6.가맹점사업자가 개점 이후의 교육 참석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는 경우	제403	5 제1항
7.가맹점사업자가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제403	5 제1항
8.가맹점사업자 또는 가맹점사업자가 제3자 명의로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제403	5 제1항
9.가맹점사업자가 관리·감독 기준에 의한 시정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제403	5 제1항
10.가맹점사업자가 승인받지 않은 제품을 판매하거나 통일성 유지를 위한 요구 품 목을 사용하지 않아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저해하는 경우	제40조	5 제1항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당사는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귀하에게 서면으로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위반 사실 및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2회 이상 통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계약해지는 무효가 됩니다.

다만,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15조의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되는 아래의 경우에는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이나 2회 이상의 서면통지 없이 계약서에 따른 절차를 거쳐 계약이 즉시해지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즉시계약 해지 사유		관련 계약조문
1. 가맹점사업자에게 파산 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우	경	제40조 제2항
2. 가맹점사업자가 발행한 어음·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불정지된 경우		제40조 제2항
3. 천재지변,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가맹점사업자가 더 이상 가맹사업을 영할 수 없게 된 경우	경	제40조 제2항
4.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	제40조 제2항



나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법원 판결을 받음으로써 가맹본부의 명성이 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하여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 가. 위법사실을 시정하라는 내용의 행정처분 나.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과징금·과태료 등 부과처분 다.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영업정지 명령		
5.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자격·면허·허가 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15일 이내의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등 그시정이 불가능한 성격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다만, 법령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등의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40조	제2항
6.가맹점사업자가 법 제14조제1항 본문에 따른 가맹본부의 시정요구에 따라 위반사항을 시정한 날부터 1년(계약갱신이나 재계약된 경우에는 종전 계약기간에 속한기간을 합산한다) 이내에 다시 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다만, 가맹본부가 시정을 요구하는 서면에 다시 같은 사항을 1년 이내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법 제14조제1항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누락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40조	제2항
7.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제40조	제2항
8.가맹점사업자가 뚜렷이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에 급박한 위해를 일으킬 염려가 있는 방법이나 형태로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으나, 행정청의 시정조치를 기다리기 어려운 경우		제2항
9.가맹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제40조	제2항

5) 계약 수정의 사유, 사전 통보 여부 및 동의 절차

당사는 계약기간 중에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귀하의 동의를 얻어 계약 조건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만일 동의를 얻지 못할 경우 기존 계약 내용대로 계약조건을 유지합니다

계약 수정 사유	관련 계약조문	
1.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변경되는 경우		
2. 가맹본부의 가맹사업운영과 관련하여 중대한 사안이 발생한 경우		
3. 가맹사업의 통일화, 활성화 등을 위하여 경영방침이 변경되는 경우	─ 제40조 제7항	
4. 가맹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재조정 절차	동의 절차
계약 수정 사유 발생 → 당사 담당팀 검토 →	수정 계약서(안)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15일
수정계약서(안) 작성 →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	이내에 동의 여부 회신
통지 → 가맹점사업자 동의 → 수정 완료	동의가 있는 경우 수정계약서에 정한 날부터 효력 발생

또한, 계약 갱신시 변경내용이 있을 경우 계약기간 만료 180일에서 90일 사이에 계약의 변경 조건을 통지하고 재계약 여부를 묻게 됩니다.

#### 7. 가맹점운영권의 환매・양도・상속 및 대리행사

1) 가맹점운영권의 환매

당사는 가맹점운영권의 환매제도를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2) 가맹점운영권의 양도

귀하가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당사에게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당사의 승인이 있어야만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양도 가능 조건	양도 절차	비고
양수인이 당사가 정한 가맹점 운영 기준을 준수할 것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양수인 면담 포함, 30일 가량 소요) → 승인 여부 통지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수・양도 계약 체결(5일 소요)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문의: 가맹사업팀 <b>031-846-0392</b>

당사가 양도를 승인하면 양수인은 양도인의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하게 되며 양수에 따른 가맹비는 면제되지만

양수인은 양수교육비 이백이십만원(부가세포함)과 물류이행보증금 이백만원은 부담합니다. 다만, 양수인이 원할 경우 당사는 양수인과 신규 가맹계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규가맹계약일지라도 가맹점 모집비용, 개점행사비 등이 일반적인 신규가맹계약보다 적 게 소요될 경우에는 비용 소요액에 상응하는 가맹금을 당사와 협의하여 지급하실 수 있습 니다.



	금액(VAT포함)		
구분	신규 가입자 *갱신요구기간(10 년)을 새롭게 부여 받고자 하는 경우	기존 가맹점 양수자 *잔여 계약(갱신요구)기간을 인정받는 계약	
합계	7,500	4,200	
가맹비	3,300	0	
교육비	2,200	2,200	
보증금	2,000	2,000	

3) 가맹점운영권의 상속, 대리행사, 위탁 등

가맹점운영권은 원칙적으로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귀하에게 주어집니다. 따라서 개인 사정 등으로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대리행사하게 할 경우에는 당사에 사전에 서 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가맹점사업자의 상속인은 가맹점 영업을 상속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속개시일로부터 3 개월 이내에 상속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상속인이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에 해당하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맹계약은 종료합니다.

구분	가능 여부(조건)	이전 범위	절차	기타 의무사항
상속	상속인 사후통지시	모든 권리의무	본부에 서면통보 → 본부 승인 → 교육 수료	교육수료 및 교육비 지급
대리행사	불가능	-		
업무위탁	불가능	-		

8. 경업금지, 영업시간 제한,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 1) 경업금지의 범위

당사는 계약기간 동안 영업지역 내에서 귀하가 **본냉삼집**과 동일한 업종의 영업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업금지 되는 업종	경업허가 절차	비고
당사의 영업, 교육, 서비스방식 과 동일한 냉동삼겹살 전문점 등을 판매하는 업종	당사는 영업비밀 및 상표보호를 위하여 겸업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문의: 가맹사업팀 <b>031-846-0392</b>

가맹점사업자는 계약기간 중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포함한 광역지방자치단체 및 인접 광역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신 및 제 3 자로 하여금 당사의 허락 없이 **본냉삼집**과 동종 업종(타사 가맹점, 독립점포 및 가맹본부 경영을 포함한다)을 경영 하여서는 안됩니다. 또한 가맹점사업자는 계약기간 중 가맹점 시설 내에서 **본냉삼집** 이외의 영업활동 및 사업체 운영을 하여서는 안됩니다.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에게 경업에 대한 동의를 서면으로 요청할 경우 가맹본부는 그 타당성을 검토후 30일이내에 예외적으로 경업을 허가 할 수 있습니다.

계약종료 후 당사의 허락 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명의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본냉삼집**의 영업비밀이 침해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 니다.

특히 가맹계약 종료 후 1년간 해당 점포 기준 반경 1킬로미터 이내에는 당사의 동의 없이 **본냉삼집**과 동종업종(타사 가맹점, 독립점포 및 가맹본부 경영을 포함한다)을 경영하여서는 안됩니다.

2)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 제한

당사는 본냉삼집의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시간	영업일수	비고
15:00 ~24:00 (단, 매장 상황에 따라	최소 주6일, 월25일 이상	문의: 가맹사업팀
영업시간은 변동될수 있음)		031-846-0392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10호에 따라 귀하가 정당한 사유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가맹계약 해지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귀하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에 의거 오전 0시 또는 1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매출이 영업에 소요되는 비용에 비하여 저조하여 3개월간 영업손실이 발생하거나, 질병의 발생과 치료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당사에 영업시간 단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영업시간을 조정해야 할 경우에는 사전에 담당팀에 통지하시기 바랍니다.

귀하가 개인 사정 등으로 영업을 불가피하게 중단하거나 영업시간을 조정해야 할 경우에는 사전에 담당팀에 통지하시기 바랍니다.

3) 권장 종업원 수 및 영업장 근무 여부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포(영업장)의 종업원 및 근무 형태를 제한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권장 종업원수	직접 근무 여부	대체 가능 인력	비고
점주 포함 최소 3명 이상	직접 근무	당사의 교육을 이수한 자	점주의 부재시 가맹본부에 사전 통보

4)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포(영업장)를 정기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리ㆍ감독 항목	감독 절차	빈도 및 시기	담당팀	비고
매장 청결(4항목)	담당자 매장 방문 → 청결도 확인 → 관리표 작성 → 가맹점사업자 확인 및 서명 → 완료	1회/월	본사 가맹사업팀	
친절도(5항목)	담당자 매장 암행방문 → 주문 → 친절도 확인 → 관리표 작성 → 완료	1회/월	본사 가맹사업팀	
품질 관리(7항목)	담당자 매장 방문 → 품질 확인 → 관리표 작성 → 가맹점사업자 확인 및 서명 → 완료	1회/월	본사 가맹사업팀	

### 9. 광고 및 판촉 활동

1)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분담 기준

당사는 **본냉삼집** 영업표지 이미지 제고 및 매출액 증대를 위한 전국 단위의 광고 및 판촉활동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가맹점사업자와 나누어 부담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광고 성격		부담비율	분담 절차	비고
丁世	10 T 01	본사부담	가맹점부담	TH 결사	n1-r
	상품광고	광고비의 50%	광고비 50% 중 가맹점 총매출액 비율 따라 산정	광고 계획 공고 → 가맹점의	대중매체 광고
장고 전체 행사	상품광고+ 가맹점모집 광고	광고비의 75%	광고비 25% 중 가맹점 총매출액 비율 따라 산정	광고참여 여부 결정 → 가맹점부담액 제시(명세서)	명절, Day 이벤트 행사
	가맹점 모집광고	전액 부담	없음		(전국 행사)
판촉행사	할인행사	할인금액 (소비자가) 50%	할인금액 (소비자가) 50%	행사계획 공고 → 가맹점부담액 제시 → 가맹점의 행사 참여 결정 → 행사 시행 → 종료 후 최종분담금 확정	판촉행사 동의 절차를 거친 후 전체 가맹점 사업자의 70% 이상의 동의시



	증정행사 팜플렛 등 제작	증정상품 출하가 50% 판촉물 제작비용 50%	증정상품 출하가 50% 판촉물 제작비용 50%	"	п
	제작 기타 개별행사	50%	50% 따라 유동적	"	"
할인카드 • 멤버십 제휴서비스	제휴행사	서비스로 인한 월 할인금액의 50%	서비스로 인한 월 할인금액의 50%	(가맹점) 월 할인금액 제시 → (가맹본부) 자료제출일로 부터 10일 이내 부담액 송금	할인서비스 등의 종료시까지

#### ※ 위 내역은 당사의 경영방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전국단위의 광고일 경우 가맹점부담액은 광고비 중 일부를 광고시행 직전 분기의 각 가맹점사업자의 총매출액 비율에 따라 분담합니다. 지역 광고일 경우에는 해당 지역 내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부담액 부분을 분담합니다.

### 2) 가맹점사업자의 독자적 광고・판촉 활동

귀하는 귀하의 비용으로 스스로 또는 다른 가맹점사업자와 함께 독자적으로 광고·판촉 등을 개별적으로 자기 지역 내에서 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영업표지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사전에 당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10.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사항

당사의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당사의 시스템, 매뉴얼, 제조, 판매, 영업, 계약 및 점포의 운영관리 등에 관하여 제3자가 인지할 경우에 당사의 영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법이나 노하우 및 이들이 수록된 운영교범 기타 자료를 포함합니다.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가맹본부의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합니다.

귀하는 계약체결 및 가맹점 운영상 알게 된 가맹본부의 영업비밀을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가맹본부의 허락 없이 교육과 세미나 자료 기타 가맹점운영과 관련하여 영업비밀이 담긴 관계서류의 내용을 인쇄 또는 복사할 수 없습



니다. 가맹점사업자 자신의 직원에 의한 의무위반에 대하여도 공동의 책임을 부담합니다. 당사의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유출할 경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11. 가맹계약 위반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이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계약위반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위약금을 청구하거나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본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계약위반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다음과 같이 위약금을 청구하거나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서 제28조 [물품 등의 조달과 관리 및 자점매입금지]를 위 1 반한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당사에 위약벌로 금삼천만원(₩30,000,000원)을 지급하 여야 합니다.
- 2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서 제40조 [계약의 해지 및 계약의 수정 ]규정에 의한 절차를 지키지 않고 가맹점의 운영을 일방적으로 폐업처리하거나 가맹본부 영업표지를 사용하지 않는 점포로 운영 또는 양도한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당사에 위약벌로 금삼천만원(₩30,0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기간 내 또는 계약종료 이후 가맹계약서 제42조 [가맹점사업 자의 비밀유지, 경업금지 의무]를 위반할 경우 위약벌로 가맹점사업자는 당사에 금 삼천만원(₩30,0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의 종료 후 당사의 상표권을 침해하여 상호, 간판, 기타 표시 물 등을 무단으로 사용할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계약 종료 익일부터 손해배상 예정 액으로 1일 금삼십삼만원(₩330,000원)씩 당사에 지불하여야 합니다.
- 5 당사는 이에 대한 채권 채무의 관계를 계약이행보증금으로 정산하고 추가적으로 발생되는 손해의 비용은 법무비용을 포함하여 당사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의 배



	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6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 또는 그 소속 임원의 위법행위 또는 가맹사업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가맹본부에게 본 계약상 구제수단 외에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VI. 가맹사업의 영업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 1. 상담・협의 과정에서부터 가맹점 영업 시작까지 필요한 절차 요약

귀하가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경우 상담일로부터 실제 가맹점이 개설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과 필요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내용	소요기간	소요비용
합계		60일 내외	
가맹희망자 문의	- 전화문의 접수 - 희망지역 확인, 담당자 배정	D-60~55	
사업 설명・상담	-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제공 - 인근 10개 가맹점 현황문서 제공 - 가맹희망자 상담	D-54~35	
점포개발 및 상권분석 실시	- 입지선정 - 입지 주위 점포 정보 제공	필요시 실시	
최종 협의	- 개설 승인	D-32~31	
가맹계약 체결	- 계약 체결	D-30	
가맹금 예치	- 국민은행에 가맹금 예치	D-29(1일)	
점포실측/설계	- 투자비 산출	D-28~7(3일)	
실내외 공사착수	- 도면협의 및 공사일정 확인	D-27(1일)	
인테리어 공사	- 공사 실시	D-27~2(25일)	
교육 실시	- 점포운영교육 실시	D-1(1일)	
점포 개설	- 가맹점 개설 및 영업시작	D-day	



위 표에 따른 소요기간은 평균적인 가맹점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협의 과정에서 시 장상황 등에 따라 그 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귀하는 본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는 본사에 소속되어 있거나 업무 연관성이 있는 변호사나 가맹거래사를 제외하고 귀하께서 선택하신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에게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등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시기 바라며, 특히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신 경우에는계약체결일이 정보공개서 제공 14일 후에서 7일 후로 단축됩니다.

#### 2. 가맹본부와의 분쟁 해결 절차

가맹계약 당사자는 계약의 해석 또는 계약에 의해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경우 법적 절차에 이르기 전까지 우선적으로 대화와 협상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도록 합니다.대화와 협상으로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할 경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2조에따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연락처: 1588-1490, 홈페이지: http://www.kofair.or.kr) 또는 시·도의 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다른 법령에 의해 설치된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재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법적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관할법원에 대해 약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Ⅷ.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 1. 점포환경개선 시 비용지원 내역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및 시행령 제13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고 있으며, 가맹점사업자의 점포환경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분담하고 있습니다. 분담비율 및 구체적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규정에 의거 가맹점사업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는 경우 및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위생·안전 및 이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점포환경개선을 하는 경우에는 비용분담을 하지 않습니다.



점포환경개선	가맹본부 부담	가맹본부 부담		비용부담	
사유	비용항목	비용비율	지급절차	제외사유	비고
점포의 시설, 장	간판교체 비용	점포의 확장 또	가맹점사업자의	점포환경개선일	
비, 인테리어	인테리어 공사비	는 이전을 수	비용 청구(공	로부터 3년 이	
등의 노후화가	용(장비·집기의	반하지 않는	사계약서 등	내에 가맹본부	
객관적으로 인	교체비용을 제	점포환경개선	공사비용을 증	의 책임없는	
정되는 경우	외한 실내건축	: 20%	빙할 수 있는	사유로 계약이	
위생이나 안전의	공사에 소요되	점포의 확장 또	서류 첨부) →	종 료 ( 계 약 의	
결함으로 인하	는 일체의 비	는 이전을 수	90일 이내에	해지·영업양도	
여 가맹사업의	용. 단, 가맹사	반하는 점포환	가맹본부 부담	포함)되는 경	
통일성을 유지	업의 통일성과	경개선 : 40%	액을 가맹점사	우 가맹본부	
하기 어렵거나	무관하게 가맹		업자에게 지급	부담액 중 잔	
정상적인 영업	점사업자가 추		(단, 가맹본부와	여기간에 비례	
에 현저한 지	가 공사를 실		가맹점사업자간	하는 부담액은	
장을 주는 경	시함에 따라		별도의 합의가	지급하지 아니	
우	소요되는 비용		있는 경우 1년	하거나 이미	
	은 제외)		의 범위내에서	지급한 경우에	
			분할지급 가	는 환수 가능	
			능)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		
			정한 자를 통		
			하여 점포환경		
			개선을 한 경		
			우에는 점포환		
			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		
			부 부담액을		
			지급		
			<분할지급 시		
			절차>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 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 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3차에 걸쳐 가 맹본부 부담액 을 분할 지급 (1차 : 청구일 로부터 90일 이내, 총 부담 액의 30%, 2 차 : 1차 지급 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 액의 30%, 3 차 : 2차 지급 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 액의 40%)

### 2. 판매촉진행사 시 인력지원 등 내역

해당사항 없습니다.

#### 3. 경영활동 자문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성화를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동에 대한 경영지도를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대상 및 내용	절 차	비용부담	비고
가맹본부 요청 시	상품, 설비(집기), 판매촉진, 고객관리, 위생관리, 교육훈련, 회계 등 가맹점 운영 전반에 대한 경영지도	가맹본부는 경영지도계획서(경영지도내용, 기간, 경영진단및 지도관계자의 성명, 소요비용 등 포함)를 가맹점사업자에게 제시 → 경영지도 후 [30]일 이내에 가맹본부 담당자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직접 방문하여 경영지도 결과및 경영개선방안을 서면으로제시하고 이를 설명	가맹본부 부담	문의: 가맹사업팀 <b>031-846-0392</b>
가맹점사업자 요청 시	상품, 설비(집기), 판매촉진, 고객관리, 위생관리, 교육훈련, 회계 등 가맹점 운영 전반에 대한 경영지도	가맹점사업자 경영지도 요청  → 가맹본부는 경영지도계획 서(경영지도내용, 기간, 경영 진단 및 지도관계자의 성명, 소요비용 등 포함)를 가맹점 사업자에게 제시 → 경영지 도 후 [30]일 이내에 가맹본 부 담당자가 가맹점사업자에 게 직접 방문하여 경영지도 결과 및 경영개선방안을 서 면으로 제시하고 이를 설명	가맹점 부담 (기맹금에 포함된 통상의 경영지도 비용을 초과한 부분에 한함)	문의: 가맹사업팀 <b>031-846-0392</b>

### 4. 신용 제공 등 내역

해당사항 없습니다.

### 5.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위한 경영상 지원 내역

당사는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위한 지원제도를 운영하지 않습니다.



### Ⅷ.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 1. 교육 • 훈련의 주요내용

당사는 **본냉삼집** 운영에 필요한 제반 지식 및 노하우를 귀하에게 전수하기 위하여 교육·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주요내용	교육방식	기한	비고
개점 전 교육	회사 소개 / 가맹점 관련 전반적인 교육 및 POS 사용, 입금 방법 등	-개별교육 -실습교육	개점 전까지	필수 교육
개점 후 교육	매장관리 및 가맹점 운영관련 종업원 관리 실무 등	-집단교육 -실습교육	별도 통보	필요시 수시

#### 2. 교육 • 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

귀하가 **본냉삼집** 가맹사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최소시간	비용(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비고
신규교육	3일	2,200	최초 계약시 이수
양수 교육	3일	2,200	기존매장 양수시 신규자 교육에 준함
보수 교육	1일	0~500내에서 실비	필요 또는 요청시

#### 3. 교육・훈련의 주체

교육·훈련은 가맹계약을 맺는 당사자가 직접 받아야 합니다. 다만, 귀하가 직접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본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 가맹점을 함께 운영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대신하게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맹계약 당사자가 원하여 당사자 외 직원도 같이 교육을 받게 되면 인원 추가에 따라 비용도 추가됩니다



#### 4. 교육・훈련 불참시에 받을 수 있는 불이익

귀하는 개점 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개점을 할 수 없으며, 점포의 관리자로 근무할수 없습니다. 또한, 개점 이후 당사가 정하는 필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계약 기간 만료 후 갱신이 거절될 수 있고, 물품공급 중단 및 가맹계약 해지 사유가 될 수 있으니 필히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 현황

###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직영점의 명칭 및 소재지

연번	지역	명칭	소재지
1	경기도	본냉삼집	경기 동두천시 평화로2313번길 7-24 1층(지행동)

상기 직영점 경기도 동두천시 본냉삼집 지행점은 관계 법령에 따라 당사의 대표가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평균 운영기간

(단위: 년, 개월)

2023년 직영점의 평균 운영 기간	비고
약 30개월	사업자등록증 기준

#### 3.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 산정기준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2023년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	비고
402,052	당사의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은 2023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서 상의 매출액을 근거로 하여 기재한 것입니다.



### [정보공개서 내용 문의]

- ◇ 이상의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문의 사항이 있거나 정보공개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한경우에는 당사(02-537-8296)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 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관련 내용이 궁금하신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고객지원담당관실(044-200-4010) 또는

가맹거래과(help@ftc.go.kr)로 문의하십시오.

개별 정보공개서 내용에 관한 문의는 받지 않고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 정보공개서는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 (http://franchise.ftc.go.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별첨 1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 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 별첨 2 정보공개서/인근가맹점 현황/가맹계약서 제공확인서 (가맹본사보관용) ▶ 아래 빈칸에 가맹희망자 본인이 직접 자필로 반드시 작성하여야 합니다.

가맹희망자 성명	(인) <b>전화번호</b>			
가맹희망자 주소				
수령일시	년 월 일 (오전/오후) 시			
수령장소	이메일 / 홈페이지 / 내용증명 / 직접수령			
	아래 빈칸에 <b>"정보공개서/인근가맹점 현황문서/가맹계약서를 수령하였습니다.</b> "라고			
	작성해 주세요.			
수령확인				

▶ 가맹희망자의 장래 점포 예정지에서 가장 가까운 가맹점 10개의 일반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 해당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영업 중인 가맹점이 10개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광역지방자치단체내의 가맹점 전체 현황을 제공하며, 장래점포예정지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확정되는 즉시 제공하겠습니다.

구분	매장명	소재지	연락처
1			
2			
3			
4			
5			
6			
7			
8			
9			
10			

정보공개서/가맹계약서 내용에 기업의 영업비밀이 들어있어 제3자에게 유포하거나 무단 도용 및 임의로 수정할 경우 관계법령에 의하여 처벌받을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가맹희망자

(인)

별첨 3 정보공개서/인근가맹점 현황/가맹계약서 제공확인서 (가맹점사업자용)



▶아래 빈칸에 가맹희망자 본인이 직접 자필로 반드시 작성하여야 합니다.

가맹희망자 성명	(인)	전화번호		
가맹희망자 주소				
수령일시	년 월	일 (오전/오후	:) 시	
수령장소	이메일 / 홈페이	지 / 내용증명	/ 직접 수령	
	아래 빈칸에 <b>"정보공개서/인근가맹점</b>		<sup>作</sup> 서를 수령하였습니다.	."라고 작성해
수령확인		주세요.		

▶ 가맹희망자의 장래 점포 예정지에서 가장 가까운 가맹점 10개의 일반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 해당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영업 중인 가맹점이 10개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광역지방자치단체내의 가맹점 전체 현황을 제공하며, 장래점포예정지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확정되는 즉시 제공하겠습니다.

78	all Three	A TII TI	Mar+1
구분	매장명	소재지	연락처
1			
_			
2			
3			
4			
5			
6			
7			
8			
9			
10			
정보공	내서/가맹계약서 내용에 기언이 영언비밀	이 들어있어 제3자에게 으피	하거나 모다 도요 민

<del>가맹계약자 내용에 기업의 영업마일이 들어왔어 제3차에게 유포아거나 무단 도용 및</del> 임의로 수정할 경우 관계법령에 의하여 처벌받을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가맹본부 본냉삼집 (인)

별첨 4 가맹금 예치신청서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2.5.7>

### 가맹금예치신청서

※ 아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	기간 즉시
	상호(가맹점명)			
신청인	성명(대표자)			
	주소(사무소)			전화번호
		삼집		
가맹본부		김점용		
	주소(사무소) <b>경기 동</b>	-두천시 평화로2313번길	7-24 1층(지행동)	전화번호
예치가맹금	₩	(금	원 정)	
 신청인의				
계좌				
가맹본부의 계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의5제1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7제2항에 따 라 위와 같이 예치가맹금을 예치해 줄 것을 신청합니다.

신청인

년 월

(서명 또는 인)

예치기관의 (지점장)

귀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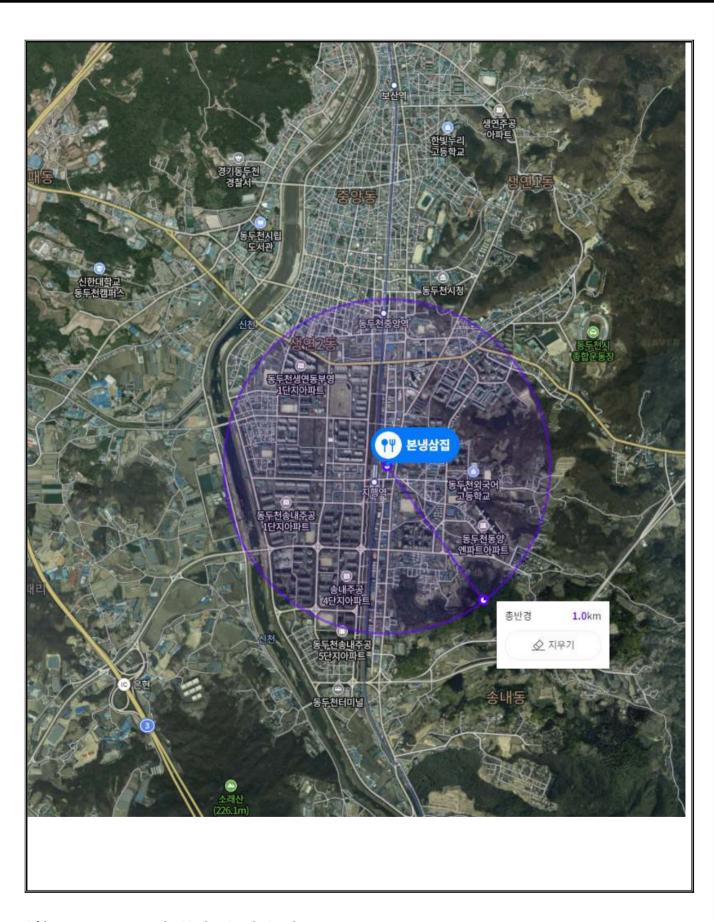
#### 예치기관이 주의해야 할 사항

- 1. 예치기관의 장은 예치가맹금을 예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예치신청인에게 예치증서를 내주어야 합니다.
- 2. 예치기관의 장은 예치기맹금의 예치일부터 7일 이내에 예치가맹금 예치증서를 첨부하여 예치가맹금을 예치한 사실을 가맹본부에 통지해야 합
- 3. 예치기관의 장은 예치가맹금의 예치 및 그 관리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을 관리수수료로서 예치가맹금의 수령인이 수령할 금액 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m²]

별첨 5 영업지역 설정





별첨 6 주방 설비 및 집기 리스트



< 주방 설비 > (약 84m² 기준 / 단위: 원 / VAT 포함)



이 항목은 개인정보ㆍ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 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 주방 집기 >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 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